

## 외국인 투자업체의 국내판매승인 요령

商工部는 7월 1 일자로 전자 제품 생산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판매 승인 요령을 상공부 고시 제81-24호로 고시했다.

### 전자제품생산 외국인 투자기업인 판매승인 요령

제 1 조 (목적) 이 고시는 전자공업의 건전한 육성과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업체가 생산한 전자제품의 판매에 관한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외국인 투자업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 6 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업체를 말한다. 다만, 외자도입법상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고시 적용에 있어서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② 전자제품이라 함은 전자공업진흥법 제 2 조 제 2 호의 전자기기등을 말하며 그 구분은 상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고시에 의한 국내판매는 외국인 투자인가를 득하고 외자도입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필하지 않더라도 상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판매를 허가 할 수 있다.

제 4 조 (판매일반원칙) ① 외국인 투자업체가 생산한 전자제품을 국내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국내 판매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내국인과 합작 투자한 외국인 투자업체(이하 "합작투자업체"라 한다)가 생산한 전자제품은 생산제품 전량을 국내판매 허용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이 단독 투자한 외국인 투자업체(이

하 "외국인 단독 투자업체"라 한다)가 생산한 전자제품은 수출실적(물량기준, 이하 동일함)의 10% 범위내에서 국내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

제 5 조 (예외조치) ① 제 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품목(이하 "예외조치품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내수급의 원활, 수출 촉진 및 국산화에 의한 가득율의 재고 등을 위하여 국내 판매 허용량 또는 수출 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예외조치품목은 연 2 회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상공부장관이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예외조치품목은 별표 1 과 같다.

제 6 조 (위임) 구미수출산업공단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업체로서 이 고시에 의하여 국내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지사가 이를 승인한다.

제 7 조 (국내판매승인신청) ① 이 고시에 의하여 국내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의 양식에 의한 국내판매 허가 신청서를 상공부 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구미수출산업공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에 한함. 이하 동일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는 전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판매 승인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공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는 전항의 승인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 관세청장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사후관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판매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내에 판매하여야 하고 그 판매를 완료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상황을 상공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재) 본 고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상공부장관이 수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판매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승 (별 표1)

인량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 당시 기 승인된 분의 국내판매는 이고시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상공부 고시 제81-24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외 조치품목 및 국내허용량

예외조치 품목	국내 판매 허용량		비고
	내국인 주식 지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업체	외국인 주식 지분율이 50% 미만인 내국인 투자업체	
일반용 전자기기	수출실적의 내국인주식지분율에 해당하는 양의 범위내	수출실적의 내국인 주식 지분율에 해당하는 양의 50% 범위내	수출실적의 2% 범위내
탄소피막가변저항기스피커	수출실적의 내국인 주식 지분율에 해당하는 양의 200% 범위내	수출실적의 내국인 주식 지분율에 해당하는 양의 범위내	수출실적의 4% 범위내

- 단, 1) 수출실적은 국내판매허가 신청전 3-6개월간의 실적임
- 2) 일반용 전자기기중 음향기기인 앰프, 튜너테크, 레코드플레이어, 스피커시스템은 동일품목으로 간주하여 상기품목들의 총물량을 기준으로 품목간 구분없이 국내판매량을 정한다.

- 3) 일반용전자기기중 컬러TV수상기와 녹화재생기의 업체별 국내판매 허용량은 전년도의 국내업체전체시판 물량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생산 개시후 1년간은 수출의 무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별표2. 전자제품 국내판매 승인신청서 생략)

## 輸出用 原資材 輸入 추천 시행 요령

상공부 고시 제80-29호(80. 11. 1) 및 제80-32호(80. 11. 25)에 의하여 본회가 輸入추천하는 輸出用 原資材의 輸入 추천에 따른 시행요령이, 본회의 제34호 공고는 폐지되고 제37호로 개정되어 7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第1条 (推薦對象品目)

CCCN	品 目	規 格	備 考
3902	폴리스틸렌(P·S)		電子製品用
7405	銅箔積層板 (Copper Clad Laminated Sheet)		

第2条 (推薦基準)

폴리스틸렌(P·S)

- ① (新規) 다음의 경우 韓國 石油化学工業協會의 國産 供給 不可能 확인서를 첨부하여 輸入推薦 한다.
  - 1) 国内 供給 價格이 輸入 Offer 가격 (CIF 基準)의 3%를 超過할 경우.
  - 2) 国内 供給 期間이 30日(契約日 基準)을 초과할 경우 但, 輸入 Offer 價格이 國際 時勢에 比하여 DUMPING 價로 認定되거나 納期가 輸出에 지장을 초래치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3) 国産 原資材의 품질이 輸出 物品 제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4) Buyer 가 特定업체에 原資材를 사용할 것을 지정하여 오는 경우.
  - 5) 기타 国産 원자재 使用時 輸出 이행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事項變更) 輸入 가격 인상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함.

### 銅箔積層板

- ① (限度) 前分期 및 当分期 国産使用 실적의 30% (但, 既 使用分은 제외)  
※ 国産 사용실적이라 함은 Local 入金 실적을 말함
- ② (限度超過) 다음과 같은 경우는 第1項의 限度를 초과하여 推薦할 수 있다.
  - 1) 外国의 安全規格을 미획득한 供給業体の 규격.
  - 2) 国内 公급이 불가능한 規格.
  - 3) 納期, 가격면에서 심히 부당한 경우
  - 4) 기타 本회 會長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 ③ 第2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本회 會長을 위원장으로 한 審議 委員會를 둘 수 있다.
  - 1) 委員 構成
    - 供給業体 代表 : 1人
    - 加工 " : "
    - 使用 " : "
    - 專門家 " : 2人以内
  - 2) 專門家は 本회 會長이 위촉하며 수당을 지할 수 있다.

### 第3条 (推薦 申請書類)

#### 폴리스틸렌(P·S)

- ① 外貨 획득용 原料 輸入 許可(承認) 申請書 7部 이내
- ② 輸入 계약서 또는 物品 売渡 確認書 1部
- ③ 国産공급 불가능 확인서 1部(韓國石油化学工業協會 發給)

### 銅箔積層板

- ① 外貨획득용 원료 輸入허가 (承認) 신청서 7部 이내
- ② 輸入 계약서 또는 物品 売渡 確認書 1部
- ③ 推薦基準 証聘書類
  - 1) 第2条① (限度)의 경우: 国産使用実績 및 輸入 限度 計算書
  - 2) 第2条② (限度超過)의 경우: 第2条②各号의 推薦 基準에 합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第4条(處理 期間)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다음과 같이 處理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폴리스틸렌(P·S)

- ① 国産 供給 不可能 確認書: 8 勤務 時間 以内
- ② 輸入許可(承認) 申請書: 3 勤務 時間 以内

### 銅箔積層板

- ① 第2条①의 경우: 限時(3 勤務 時間 以内)
- ② 第2条②의 경우:
  - 1) 審議會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 5日以内
  - 2) 기타: 1日(8 勤務 時間 以内)
- ③ 供給業体的 確認書: 1日(8 勤務 時間 以内)

第5条(推薦書의 有效 期間) 輸入추천서의 유효 기간은 推薦日로부터 30일로 한다.

第6条(其他) 本 要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 附 則

1. 本 要령은 81. 7. 1부터 施行 한다.
2. 本会 公告 第34号(81. 3. 12)는 이를 廢止 한다.

# 81년 중소기업 계열화 특정업종 및 지정계열화 품목 추가공고

商工部는 81년 6월 26일자로 중소기업 계열화 시책을 확대 촉진하기 위하여 81년도 계열화 특정업종 및 지정 계열화 품목을 추가조정하여 상공부 공고 제81-47호로 공고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제5조에 의거 상공부 공고 제80-125호(80. 12. 30)로 공고한 특정업종 및 지정계열화 품목을 별첨 1 과 같이 확대 조정하고, 동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열화 품목, 생산실태, 신고요령과 공동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별첨 2 및 3 과 같이 공고했다.

### 1. 특정업종 및 지정계열화 품목

특 정 업 종	지정계열화 품목
1. 전자(TV, 녹음기, 앰프, 스피커)	고정저항기 가변저항기 고정축전기 가변축전기 코일, 변성기류 확 성 기 P C B 로드 안테나 스 위 치 코 벡 터 크 리 스타 각 종 코 드 플 렉 Fuse 소 형 모 터 녹 음 테 이 프 마 그 네 틱 헤 드 FM Tuner Magnet Frame

특 정 업 종	지정계열화 품목
	Voice Coil Gasket Bobbin 진 동 판 Yoke Plate 캐 비 넷 Deck Machanism Cone Paper (소 계 29)
2. 전동력응용기계류(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믹서)	Switch류 Heater 류 Power Cord Evaporator Fuse Rubber Magnet Timer Gasket 류 Fuse Holder Trans Soket Connector Mold류 합성수지 사출성형물 Compressor 주물 고무바킹류 호 스 벨 브 류 Fan Cover (망) Cam Gear 오일레스베어링 정 류 자 카본브러쉬 카본브러쉬홀더 (Cap 포함)

특 정 업 종	지정계열화품목
	컵 바 킹 컵 (소 계 26)
3. 전열기구류(밥 통, 밥솥, 다리 미)	시 즈 히 타 열판 및 밑판 Switch류 온도조절기(감온소자포 함) 코 드 붓 싱 애 자 Power Cord 램 프 (소 계 8)
4. 전화기	Dial 콘 텐 서 저 항 기 송 수 화 갑 인덕손코일 송수화갑케스 전화기케스 공중전화케스 전화기코드 벨 및 코 일 (소계10)
5. 전 구	도 입 선 베 이 스 텅스텐 필라멘트 (소계 3)
6. 변 압 기	1 차 붓 싱 2 차 붓 싱 2 차 붓 싱 (금구) 후 렌 지 유 면 계 온 도 계 브 리 자 발 브 탭 절 환 기

특 정 업 종	지정계열화품목
	명 관 탭 절 환 기 행 들 터 미 날 볼 트 류 (소 계 13)
7. 전동공구 (Drill, Grinder)	Housing OHD M/C Screw Brush Holder Brush Cap Carbon Brush Switch Condenser Power Cord Ass'y Gear Cover Chuck Ass'y Resiniod Wheef (소 계 11)
8. 적산전력량계	전 류 코 일 밀 관 단 자 블 렉 전 압 코 일 上 보 석 下 보 석 유 리 커 버 유 리 커 버 밴 드 송 차 (소 계 9)
9. 유도전동기	Braket Base & Frame Fan cover 구 리 스 닷 플 단 자 Box 단 자 Cover 단 자 류 볼 트 류 Brush Holder Fan (소 계 10)

특 정 업 종	지정계열화 품목
10. 복사기	셀렘드럼 볼트, 너트, 외샤 메인하비드 (소 계 3)
11. 손목시계	케 이 스 밴 드 (소 계 2)
12. 작동완구	D/C 모터 Steel Gear-Box Plastic Gear-Box Wheel (소 계 4)

## 2. 지정계열화 품목 생산실태 신고요령

가. 본 공고일 현재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모기업체중 지정계열화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자는 1981. 7. 15까지 다음에 계기된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81. 2. 15 신고한 품목은 제외)

업 종	경 유 기 관
전자(TV, 녹음기, 앰프, 스피커)	전 자 공 업 협 동 조 합
전동력동용기계류 (병장고, 세탁기, 선풍기, 믹서)	전 기 공 업 협 동 조 합
전열기구류 (밥통, 밥솥, 다리미)	전 기 공 업 협 동 조 합
변 압 기	전 기 공 업 협 동 조 합
전 동 공 구	전 기 공 업 협 동 조 합
적산전력량계	전 기 공 업 협 동 조 합
유도전동기	전 기 공 업 협 동 조 합
전 구	조 명 공 업 협 동 조 합
복 사 기	기 계 공 업 협 동 조 합 연 합 회
손 목 시 계	시 계 공 업 협 동 조 합
작 동 완 구	완 구 공 업 협 동 조 합

나. 신고내용은 별첨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 미신고 및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 제19조(2)항 1호에 의거 의법 조치 한다.

## 3. 공동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가.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모기업체와 지정계열화 품목의 제조를 위탁받은 수급기업(중소기업)체가 속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81. 7. 15일까지 공동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동사업계획서 작성은 별첨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공동사업계획서의 효력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2년이 경과한때는 효력 종료 1개월전에 2개년간의 공동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81. 3. 28 공동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은 자는 81. 12. 30일까지 동공고 제3항

“나”, “다”의 요령에 따라 공동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재승인을 받을것)

라. 공동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자금지원 및 경영, 기술지도등의 지원을 한다.

마. 공동사업계획서 작성에 불응한 자는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 제14조 제1항 2호 및 제19조 제1항 2호에 의거 의법 조치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1号, 第2号 書式은 생략함).

대형설비 도입 사전신고 요령 폐지

商工部는 제79-141호에 의한 대형설비 도입 사전신고 요령을 상공부 공고 제81-51호에 의하여 폐지하였음을 공고 한다.

1981. 7. 1.

상공부장관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 電子製品 輸出 추천요령

본회는 81. 7. 2 일자로 81년도 下半期 및 82년도 上半期 輸出入에 대하여 商工部 電子 1333-487호(81. 7. 1)에 의거 다음과 같이 輸出 추천요령을 공고하였다.

## 1. 추천 대상품목

CCCN	추천 대상 품목
8452	탁상용 전자계산기
8455	전자계산기 부분품
8501	변성기 및 코일류(전자기기용에 한함)
8501	헤라이트 코아
8503	일차전지
8513	① PABX 전화 교환대 ② 반송장치 ③ 전화기 및 동부분품 ④ 인터폰 및 인터콤
8514	① 이어폰 및 헤드폰 ② 앰 프 ③ 스피커(확성기)
8515	① TV 수상기 ② TV 튜 너 ③ 라디오(축음기와 결부되었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한다) ④ 무선통신기
8519	① 고정 및 가변저항기 ② 스위치류(전자제품용에 한한다.)
8521	① 트랜지스터 ② 집적회로 ③ 다이오드(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 포함) ④ 진공관 ⑤ CRT(브라운관) ⑥ LSI(대형집적회로) ⑦ 계수표시판 ⑧ 수정진동자 ⑨ 수정발진자
9028	① 전자계측기 ② 지시계

CCCN	추천 대상 품목
9101	LED 또는 LCD 지시형 전자시계
9107	LED 또는 LCD 지시형 전자시계의 무브먼트
9211	① 녹음기 ② 축음기 ③ 테이프 데크 ④ 턴 테이블
9212	① 카세트형 테이프 ② 카트리지형 테이프
9213	① 테이프 데크 메카니즘

## 2. 추천범위 및 기준

가. 수출 자율 규제 대상 품목은 동 자율 규제 요령(지침)에 의한다.

나. 본회가 정한 수출 추천 기준 가격 대상 품목은 동 기준가격에 합당한 분에 한한다.

## 3. 처리기간: 즉시

## 4. 구비서류

가. 수출허가(승인)신청서 7부

나.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다.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 5. 추천장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서울시 중구 회현동 2가 10-1 무역회관 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부산분사무소

(부산시 대교동 2가36 부산상공회의소 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구미분사무소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06 구미수출 산업공단 내)

부 칙

이 요령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산 電子製品 免稅 쿠폰制度 實施

關稅廳은(告示 第81-255号 81. 7. 1) 免稅 쿠폰 制度를 實施하기로 했다. 이번의 告示는 輸入1242-3355, (78. 9. 15)와 關稅청 告示 第 80-227号(80. 10. 2)를 보완하여 海外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쿠폰制度 實施 對象地域은 中東 및 아프리카

地域이다. 대상 품목은 컬러TV, 콤팩트TV, 리시버형 앰프, 뮤직센터, 카메라, 카세트등이며 電子業界에서는 8個社가 참가하여 商工部의 價格承認을 받고 쿠폰을 배정 받았다.

문의처 : 본회기획과(778-0913-8)

## 스리랑카 투자진흥 세미나 案内

스리랑카 정부는 1981. 10. 19~23일 까지 DHICH Colombo에서 투자진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의 주관은 스리랑카 재무기획성이며, 유엔 공업개발기관, 스리랑카 상공회의소, 콜롬보 경제위원회, 실론은행, 국민은행과, 국가개발은행이 후원을 한다.

선진 공업국가와 자본금, 기술, 시장 점유를 가진 개발도상국의 재정기관과, 상사들이 모여서 스리랑카 투자자와 합작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스리랑카가 원하는 합작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 합작형태

- 1) 자본, 기술, 시장구매를 공동 분담 하는

합작회사.

- 2) 자유 무역지역에서의 100% 외국자본 유치
- 3) 하청과 추천의 설비
- 4) 공업국가의 기업들 중에 전부 또는 부분적 이동.
- 5) 재 정

스리랑카 사업자와 개인적인 회담을 준비할 관심 있는 참석자들은 1981. 9. 11 이전에 본회에 연락해 주기 바란다.

투자 Project : Manufacturing industry such as 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ies

○ 문의처 : 本會國際部(778-0916)

## 품목별 주요부품 최저보유기간 설정

공업진흥청은 1972. 7. 1. 일자로 소비자 보호방안으로 가정용 전기용품에 대한 효율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위하여 품목별 주요부품 보유 기간을 설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 명	보유기간 (년)	비 교
전 기 주 전 자	3	주요 성능 부품
전 기 다 리 미	3	에 한하여 적용
전 기 청 소 기	5	한다.

전기 우물 펌프	5
쥬 스 믹 서	3
모 발 건조 기	3
레코드플레이어	5
앰 프	5
초음파 가습기	5

○ 단, 모델이 변경되어 단종될 경우의 그 단종 시점부터 단종 제품의 전용부품 최저 보유기간임.